

제2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3.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 3월 7일
전문위원 권 오숙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23 - 38

나. 발의자: 최세진 의원 외 9명

다. 발의일자: 2023년 2월 24일

라. 회부일자: 2023년 2월 27일

2. 제안이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 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9조)

라. 학교폭력예방센터의 설치·운영, 기능, 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1조의3, 제15조
-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3. 2. 27. ~ 3. 6.)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건전한 학교문화 및 신뢰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 용어의 정의

- 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 학교폭력: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안 제3조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5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 및 상호협력·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에 응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방안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심리검사,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강서구학교폭력예방센터의 설치·운영, 기능, 그리고 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존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¹⁾의 기능과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

제11조(예방센터의 기능) 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의 연구
2. 학교폭력 신고·접수
3. 심리검사, 위탁상담, 개인·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4.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치료
5. 학교폭력 관련 홍보자료 발간·배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업

○ 안 제13조에서는 관련 직무 수행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명시 하여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4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에 대한 표창 수여를 규정함

1)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강서구 화곡로18길 14-5):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강서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구립청소년전문상담기관. 도움이 필요한 관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안전망을 통하여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다양한 지역 자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²⁾의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따라 상위법 취지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것임
-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³⁾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운영이나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이 교과 내용의 학습기회 뿐만 아니라 또래들 간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 등을 통해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향상할 기회까지 박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조사대상: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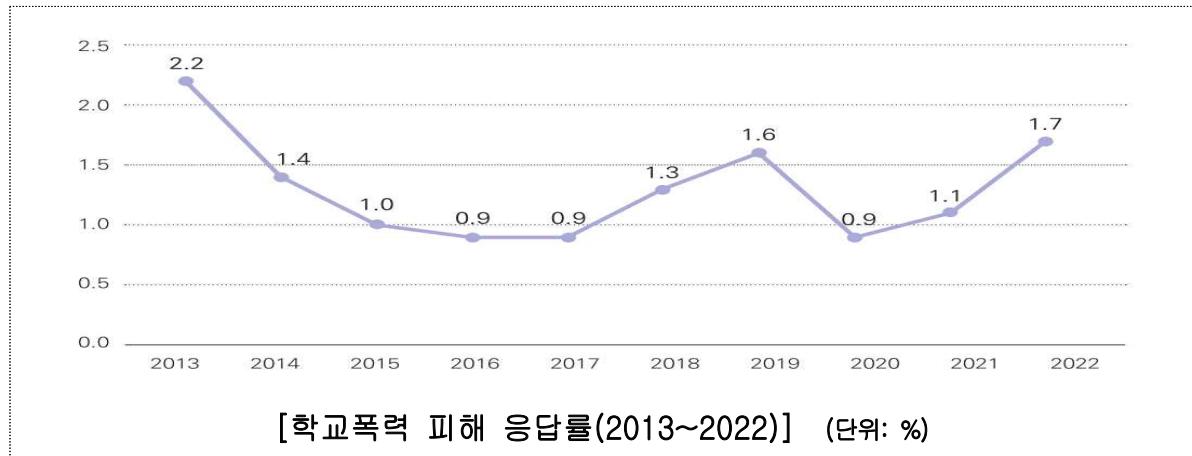
조사대상 수 3,874,867명 중 3,214,027명 참여 (참여율 82.9%)

- 조사기간: 2022. 4. 11. ~ 5. 8.

- 조사방법: 나이스(NEIS) 기반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 조사내용: 2021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역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증가 및 대면 기회 축소로 일시 감소하였으나, 2021년 대면수업 시간이 확대되고, 2022년 전면등교가 실시됨에 따라 다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체 폭력 피해 경험률까지 높아진 것으로 확인⁴⁾되어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청소년기의 학교폭력은 일생의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들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과의 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 비중

- 2022년: 언어폭력 > 신체폭력 > 집단따돌림 > 사이버폭력 > 스토킹 > 금품갈취 > 강요 > 성폭력
- 2018년: 언어폭력 > 집단따돌림 > 스토킹 > 사이버폭력 > 신체폭력 > 금품갈취 > 성폭력 > 강요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 ·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학교폭력”이란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内外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제목개정 2011. 5. 19.]

□ 청소년복지 지원법 (약칭: 청소년복지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